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곽영학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년 12월 10일
- 회부일자 : 2019년 12월 10일

3. 개정이유

-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행정·경제부지사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경제통상국을 '경제'와 '산업'분야 전담국으로 분리 신설 하는 등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기구 조정>

- 정무부지사 명칭변경 : 정무부지사 → 경제부지사 (안 제4조)
- 국 분리 신설 (안 제9조의2)
 - 경제통상국 →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 신성장산업국 존속기한 : 2021. 12. 31.까지 (안 부칙 제3조)

<분장사무 조정>

○ 부지사 분장사무 조정 (안 제4조)

- 행정부지사

- 도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경제부지사 소관 사무 제외)
-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 정부,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등

- 경제부지사

-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국,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 공항관련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등

○ 신성장산업국 분장사무 신설 (안 제9조의2)

-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반도체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차세대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드론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국 분리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이관 (안 제9조의2)

- 미래신산업정책 발굴 및 육성·지원, 지방과학기술 진흥, 4차 산업혁명 육성·지원, ICT산업 육성·지원 및 에너지 관련 업무 등

: 경제통상국 → 신성장산업국

○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분장사무 이관 (안 제13조의2)

- 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실 → 환경산림국

<기타 조정>

- 바이오산업국 국 순서 신성장산업국 다음으로 조정 (안 제5조)
- 서울세종본부 사무소 위치 현행에 맞게 조정 (안 제56조의2)
 - 기존 : 서울특별시 관내 또는 도 본청
 - 조정 : 서울특별시 관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5.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행정·경제부지사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경제통상국을 ‘경제’와 ‘산업’분야 전담국으로 분리 신설 하는 등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둘째, 신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신성장산업국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일부 분장사무를 경제통상국에서 신성장산업국으로 이관하고,

셋째,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일부 물관리 업무를 재난안전실에서 환경산림국으로 이관하고,

넷째, 서울세종본부 사무소의 위치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이는 행정안전부의 국 추가 신설 허용에 따라 경제분야 업무의 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국을 신설하여 이에 맞게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등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